

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1. 4. 23.(금)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국민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 「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

나. 제안의 채택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에 제안의 보완기간을 불산입하는 단서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개정(안 제13조)

-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
- 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로 개정

마.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조항 개정(안 제14조)

-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제안실시관련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의 채택 여부 결정 기간을 10일로 한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1. 4. 15. ~ 4. 21.(6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이 2017. 1. 6.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제안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제안에 대한 보완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 11조에는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원과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제안제도 추진현황 (2017 ~ 2020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시민제안	접수	213	211	178	60
	채택제안	5	4	6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 중 시민제안의 활성화와 제안자에 대한 격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택 등급을 추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근거로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 현행 근거조례 :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6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4. 작성자

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현행 조례)****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정) 2010.01.07 조례 제 877호  
(일부개정) 2014.01.09 조례 제1162호  
(일부개정) 2014.09.22 조례 제1192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8.13 조례 제1269호  
(일부개정) 2017.0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05.11 조례 제1432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67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31-590-20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민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경우

다.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라.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바.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 사.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 아.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자. 그 밖에 남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2. “채택제안”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에서 과제를 미리 선정해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 5.11.]

**제4조** <삭제 2017. 5.11.>

**제5조** <삭제 2017. 5.11.>

- 제6조(제안서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안자가 제3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제7조(제안 제출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 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제출 준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각종 자료 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17. 5.11.>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11.>
  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11.>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7. 5.1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주무과장, 접수된 제안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17. 5.11., 2019. 10. 10.>

**제11조(수당)**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견조회)** ①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3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결정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제9조에 따라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5.11.]

**제15조(채택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11.>

**제16조(시상 및 부상 등)**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17. 5.11.>

1. 금상 : 100만원
2. 은상 : 70만원
3. 동상 : 50만원
4. 노력상 : 3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5.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제안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1.>

④ 수상 후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 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5.11>

**제17조(사후관리 등)** <조 제목 변경 2014.01.09>

① 채택제안은 실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주관부서는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1>

② 실시주관부서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11>

③ 시장은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01.09>

④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01.09>

**제1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제안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8.1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2017. 5.11.,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